

# 항공기술교육원 계약직 교관 임용 규정



## 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# 항공기술교육원 계약직 교관 임용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 계약직 교관(건설교통부 승인 직제)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적용)** 이 규정은 항공기술교육원 계약직 교관에 적용한다.

**제3조 (정의)** 항공기술교육원 계약직 교관이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근무조건, 처우, 임용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항공기술교육원 교육을 전담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교관을 말한다.

**제4조 (자격)** 항공기술교육원 계약직 교관의 자격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

① 공통조건

1.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2.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
3.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

② 필수조건 (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)

1. 항공정비사에 관한 실기교육 5년 또는 항공정비사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
2. 정부인가 기관에서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

**제5조 (직급)** 항공기술교육원 계약직 교관은 직급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으며 학과교관 또는 실기교관으로 구분하여 임용한다.

**제6조 (의무)** ① 학과교관은 주당 15시간 이상의 학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실기교관은 주당 20시간 이상의 실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단, 현장실습시간은 의무교육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.

**제7조 (학생지도)** 항공기술교육원 계약직 교관은 학과목 또는 실습을 전담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.

1. 학생 개인별 학사관리 (수강신청, 성적관리 등)
2. 학생 진로 상담
3. 학생생활 상담
4. 기타 학생 품행에 대한 지도 등

**제8조 (겸직금지)** ① 항공기술교육원 계약직 교관은 타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다.

② 전임이 아닌 직에 위촉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.

**제9조 (임용기간)** ① 항공기술교육원 계약직 교관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②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총장은 교육업적 및 근무내용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.

**제10조 (임용절차)** 항공기술교육원 계약직 교관의 임용은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11조 (임용계약)** ① 임용계약은 개인별로 체결하며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.

1. 임용기간
2. 급여내역
3. 책임교육시간
4. 기타 임용에 필요한 사항

③ 기타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본 대학교 관계규정을 적용한다.

**제12조** (휴직) 항공기술교육원 계약직 교관은 임용기간 중 휴직할 수 없다.

**제13조** (처우) 항공기술교육원 계약직 교관의 보수는 별도로 정한 근거에 의한다.

**제14조** 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관계법령, 법인정관 및 본 대학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<규정명칭 변경>